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송명화, 송정빈, 김정환, 황인구,
김상진, 이정인, 김용연, 김인호,
추승우, 김종무, 최기찬, 김재형,
송아량, 김소양, 김달호, 권수정,
문장길, 전석기 의원(18명)

1. 제안 이유

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'정책위원회'로 변경(2018. 1. 4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정책연구위원회,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명칭을 변경함 (안 제4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참조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<u>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</u> <u>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</u>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<u>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